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
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의 목적에 대한 인용조항이 제11조 제6항에서 같은 조 제8항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의 요구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 경비 보조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의 목적에 대한 인용 조항 이동 및 특별자치시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(안 제1조, 제2조)
나.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여건,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보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“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 충당 지자체 보조 제한” 규정 폐지(안 제3조 제3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협의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”를 “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이하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“보조사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~6. (생략)	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보조사업의 제한)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. 1.·2. (생략) 3.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	제3조(보조사업의 제한) ----- ----- <u>어</u> <u>느 하나에</u>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656